

광주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385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민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78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1)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당초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7.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소송을 수계하고,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4.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3.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부인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써 무익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기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발생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23. 1. 13. 전라남도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F초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외 1건(공사구분 :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건물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대금 : 289,069,300원)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2023. 1. 25.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3. 1. 25.부터 2023. 4. 5.까지, 대금 2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23. 1.경부터 2023.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217,132,22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23. 5. 2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17,132,2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공사대금을 2023. 5. 30.까지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지급확인서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2023. 6. 7.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17,132,220원을 2회로 분할(2023. 6. 30.에 108,566,110원을, 2023. 7. 31.에 108,566,110원을 각 지급하되, 단 1회라도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함)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G 접수 제2023년 제674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등

- 1) B은 2023. 6. 7.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3.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8844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2)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이었다.

다. 소송수계 등

-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3. 7. 31.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B은 2023. 10. 11. 파산선고(광주지방법원 2023하단5663)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3) 원고는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 강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단독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B과 아무런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B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던 2023. 6. 7.에 이미 이행기(2023. 5. 30.)가 도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고, 위 연대보증채무도 그 이행기인 2023. 6. 30.에 일부 채권액인 108,566,110원이 변제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채권 전액인 217,132,220원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B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 이 사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1달이 되지 않아 그 이행기까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역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져 B의 채권자인 피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할 수 있을 뿐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소는 부인의 소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B에게 수 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기 전인 2023. 6. 2. 법무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가능성을 상담받았으므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인권 행사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별지

1) 파산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는 모든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인의 소의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